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10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이학영 · 진선미 · 안호영
박희승 · 염태영 · 김주영
한민수 · 강준현 · 박민규
백선희 · 박정현 · 김현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고, 결혼·임신·출산 연령이 늦춰지고 있음에 따라 난임 시술 희망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반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은 1회 시술비용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고, 실패를 거듭할 경우 수천만원의 본인 비용이 발생하는 등 난임부부에게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0.78명이라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확실한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임신·출산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한편,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11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난임 극복 및 치료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실시하여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거나 소득 등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고, 「한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 이 경우 「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 2. ~ 4. (생략)
- ③ (생략)

원. 이 경우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거나 소득 등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고, 「한의학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 2. ~ 4.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